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·도로)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제시안

1. 변경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 상, 일부 구간의 폭은 4.7m에 불과하며 전체 지하연결통로 153m중 30m구간에만 무빙위크가 설치 될 예정임. 이는, 향후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10m 이상의 보행 공간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, 무빙위크 설치구간 확대 등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.
2.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 시행한 각종 영향평가는 검토서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신뢰도 검증에 한계가 있음.
각종 영향평가가 사업시행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대규모점포 입점이 해당 지역의 상권 및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, 평가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과정이 충분히 선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.

2022. 10. 21.

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